

■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[별표 5]

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(제39조제4항 관련)

| 유 형     | 이관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관인류     | 신규 관인 제작, 기관 폐지, 명칭 변경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는 경우          |
| 상징물·기념물 | 행사, 사업 종료, 기관 폐지 시<br>화폐, 우표, 도안 등은 생산 후 60일 이내 |
| 사무집기류   | 해당 형상물 활용 종료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 타     |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